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5조), 공공기관은 공개할 의무를 가집니다(정보공개법 제3조).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더불어 정보 접근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 목록(생산공문서목록)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8조).

하지만 엄연한 공공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미처리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시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이에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0일 이내 결정통지율은 전체 통지 건수 대비 94%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은 법에서 정한 통지일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계 (건)	당일(즉시) 통지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23	0	1	11	11

<2015년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대통령경호실은 임의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도록 아예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진정인의 경우 2014년 1월 2일에 대통령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만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

은 채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 2016년 1월 11일의 정보공개청구건과 2016년 7월 18일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서도 접수완료 상태에서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접수번호	청구일자	제목	처리기관명	처리상태	처리일자	비고
4097777	2017.06.14	공개재분류	대통령경호실	처리완료 (공개)	2017.07.11	
 3599487	2016.07.18	회의록 생산	대통령경호실	접수완료	2016.07.21	
 3325202	2016.01.11	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접수완료	2016.01.11	
 3223229	2015.10.27	정부 운영 TF	대통령경호실	처리완료 (비공개)	2015.11.13	
 3012587	2015.05.19	특수활동비	대통령경호실	처리완료 (비공개)	2015.06.12	
 2435262	2014.03.06	업무관리시스템	대통령경호실	통지완료 (부존재)	2014.03.17	
 2412814	2014.02.13	정보공개시스템 처리	대통령경호실	처리완료 (공개)	2014.02.25	
 2361688	2014.01.02	내부 운영 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처리중	2014.01.14	
2243488	2013.11.25	대통령전용차	대통령경호실	처리완료 (비공개)	2013.12.06	

그림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처본(2017년 7월 18일)

대통령경호실의 정보공개업무 공백상태는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인 본인 이외에도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인(이하 '진정인 외 청구인')의 청구처리에 있어서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결정기한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인 외 청구인은 2016년 2월 24일과 2017년 5월 15일 대통령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일 현재까지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건 역시 접수완료 상태에서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총 3건  다중기관청구



접수번호	청구일자	제목	처리기관명	처리상태	처리일자	비고
4046317	2017.05.15	업무담당자	대통령경호실	접수완료	2017.05.18	
 3771365	2016.11.21	정보공개	대통령경호실	처리중	2016.12.03	
 3391217	2016.02.24	업무추진비	대통령경호실	접수완료	2016.03.07	

그림 2.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처본(2017년 7월 19일)

또한 2016년 12월 3일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대통령경호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공개처리중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유지 의무이며, 대통령경호실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처리를 하지 않아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접수대기	접수	처리중	통지완료
------	----	------------	------

▶ 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	대통령경호실		
접수일자	2016.11.21	접수번호	3771365

▶ 청구인정보

이름	조민지	생년월일	880116-*****
주소	(03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전화번호	070-4027-7354	휴대전화	010-2277-4551
팩스 번호		전자우편	cmj880304@gmail.com
청구처리안내 수신방법	수신거부		

▶ 신청정보

제목	정보공개		
청구내용	2014년 1월 ~ 2016년 10월 31일 까지 귀 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1. 정보공개 처리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이의신청 처리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단, 위의 정보 중 청구인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청구일자	2016.11.21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참조문서	[첨부파일없음]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그림 3.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캡처본(2017년 7월 19일)

대통령경호실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법 제11조(공개결정기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공개기한) 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 절차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여부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진정인이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11조 등 정보공개 의무와 정보공개결정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합니다.

2) 정보목록의 부재

정보공개법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도 당연히 정보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은 "정보목록을 아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실은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증거자료1. 참고) 하지만 정보목록은 별도로 생산·작성을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공문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공개문서의 경우 법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보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 등 업무성격으로 치자면 대통령경호실에 견줄 만한 국가정보원도 매우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100%가 비공개 업무로만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문서의 전체가 비공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명백한 과도한 비밀주의,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증거자료2. 참고) 대통령경호실의 의도적 정보목록 미공개는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